|  |  |  |
| --- | --- | --- |
| **도피(연락두절)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인정처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6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관리를 한 단계 강화하고, 세수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도피(연락두절)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인정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도피(연락두절)기업의 판정  도피(연락두절)기업은 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무기관의 감독관리를 벗어난 기업을 의미한다.  세무등기관리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세무기관이 현지조사, 전화조회, 세무관련사항 처리조사 및 기타 징수관리수단을 활용하였으나 여전히 기업 및 기업 유관인원에 대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대리기장업체, 세무신고직원 등과의 연락은 가능하나 이들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또한 기업의 실질적 통제인과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을 도피(연락두절)기업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도피(연락두절)기업이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처리  2.1 도피(연락두절)기업 존속경영기간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이상(异常)증치세 공제증빙(이하 “이상(异常)증빙”으로 약칭)범위에 포함시킨다.  2.1.1 상업무역기업이 구매 및 판매한 화물명칭이 심각하게 배치되는 경우; 생산기업이 실제 생산가공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위탁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생산 에너지 소모상황이 판매상황과 심각하게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화물을 매입하였으나 판매화물을 직접 생산할 수 없고 동시에 위탁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2.1.2 직접 도피∙실종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표 관련 서식란에 기입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세무기관 심사대조를 회피하여 허위신고를 진행한 경우  2.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이상(异常)증빙을 취득하고 공제 신고나 수출퇴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공제 또는 퇴세처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공제 신고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전출(공제불능매입세액)로 처리한다. 이미 수출퇴세를 처리한 경우, 세무기관은 이상(异常)증빙과 관련된 퇴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심사통과된 기타 퇴세세액에 대해 수출퇴세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기타 퇴세액이 없거나 또는 퇴세액이 관련된 퇴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출기업이 차액부문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현행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수출퇴세 관련 규정에 부합됨이 확인되는 경우, 기업은 계속 공제 신고를 할 수 있고, 또는 담보를 해지하고 계속하여 수출퇴세를 처리할 수 있다.  2.3 이상(异常)증빙은 발급한 기업의 주관 세무기관이 수령자 기업의 소재지 세무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구체적인 처리규정은 별도로 명확히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12월 1일 |  | **关于走逃（失联）企业开具增值税专用发票认定处理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76号  为进一步加强增值税专用发票管理，有效防范税收风险，根据《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有关规定，现将走逃(失联）企业开具增值税专用发票认定处理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走逃（失联）企业的判定  　　走逃（失联）企业，是指不履行税收义务并脱离税务机关监管的企业。  　　根据税务登记管理有关规定，税务机关通过实地调查、电话查询、涉税事项办理核查以及其他征管手段，仍对企业和企业相关人员查无下落的，或虽然可以联系到企业代理记账、报税人员等，但其并不知情也不能联系到企业实际控制人的，可以判定该企业为走逃（失联）企业。  　　二、走逃（失联）企业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处理  　　（一）走逃（失联）企业存续经营期间发生下列情形之一的，所对应属期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增值税扣税凭证（以下简称“异常凭证”）范围。  　　1.商贸企业购进、销售货物名称严重背离的；生产企业无实际生产加工能力且无委托加工，或生产能耗与销售情况严重不符，或购进货物并不能直接生产其销售的货物且无委托加工的。  　　2.直接走逃失踪不纳税申报，或虽然申报但通过填列增值税纳税申报表相关栏次，规避税务机关审核比对，进行虚假申报的。  　　（二）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异常凭证，尚未申报抵扣或申报出口退税的，暂不允许抵扣或办理退税；已经申报抵扣的，一律先作进项税额转出；已经办理出口退税的，税务机关可按照异常凭证所涉及的退税额对该企业其他已审核通过的应退税款暂缓办理出口退税，无其他应退税款或应退税款小于涉及退税额的，可由出口企业提供差额部分的担保。经核实，符合现行增值税进项税额抵扣或出口退税相关规定的，企业可继续申报抵扣，或解除担保并继续办理出口退税。  　　（三）异常凭证由开具方主管税务机关推送至接受方所在地税务机关进行处理，具体操作规程另行明确。  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6年12月1日 |